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61
----------	------

제출년월일 2000.5.10

제 출 자 파주시장

□ 제안이유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조례가 되어있어 건축허가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서류를 준비토록 하여 건축주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술위원회개최전 미술장식품 가격결정을 한국미술협회파주시부에서 확인토록하여 파주시미술위원회와 중복심의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위함

□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한 것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90일 이내 제출토록하여 건축허가 된 연후에 미술장식품 관련서류준비와 작가와 작품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 부담 경감

나.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을 한국미술협회파주시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파주시미술위원회와 중복심의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

다. 미술위원회 위원구성중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 함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를 “건축법 제2조 제2항” 로 하고 동조 제4호 “판매시설” 을 “판매 및 영업시설” 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90일 이내” 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5호” 를 “제2호 내지 제6호” 로 하고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제9조제2항중 “ 건설도시국장” 을 “ 총무국장, 건설국장” 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별지서식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 12부(건축개요, 미술장식품 개요, 작가 소개서, 건축물의 배치도 또는 미술장식품 주위 현황도, 작품사진, 작품도면, 건축물과의 조화(컴퓨터시뮬레이션등), 건축물의 투시도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u>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u>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u>건축법 제2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u>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u>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u>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90일 이내</u>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되 <u>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파주지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u>	제5조(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기능)①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전성과 보존성 5.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제8조(기능)①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2. 작품의 예술성 3.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4. 작품의 공공성 5. 작품의 안전성과 보존성 6.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제9조(구성)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파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9조(구성)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총무국장, 건설국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간사)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별지서식 첨부서류 1.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 2부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1부 (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별지서식 첨부서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 12부(건축개요, 미술 장식품 개요, 작가 소개서, 건축물의 배치도 또는 미술장식품 주위 현황도, 작품사진, 작품도면, 건축물과의 조화(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건축물의 투시도 등)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건축 개요	위 치					
	건 축 주	성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최고높이		구조	
	용 도		의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에 정일		총공사비	
건 축 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품 개 요	작 가 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 가 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 가 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총설치수					
	총가액		설치예정일			
위와같이 신청 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첨부서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 12부(건축개요, 미술장식품 개요,작가소개서 건축물의 배치도 또는 미술장식품 주위현황도, 작품사진, 작품도면, 건축물과의 조화(컴퓨터시뮬레이션등), 건축물 루시도등)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 경우 당해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것